

인천 용현 경남아너스빌(조합취소분)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7.12.(수)]



- **건분주택(현장홍보관)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은 동별 사용검사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장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com>) 및 현장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1. 현장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현장홍보관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분양일정 및 현장상황에 따라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되거나 운영방식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은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com>)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2. 현장홍보관 방문 시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불가하며,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현장홍보관 체류시간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는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공통)
- **본 아파트는 현장홍보관 내 대표번호(☎032-888-555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당첨자의 현장홍보관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32-888-5554)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04. 동별사용검사 승인된 주택으로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유/무상 옵션 등에 대해 변경, 추가, 삭제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의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7.1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선정 이후에도 당첨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에 의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 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기준,일정,방법,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이용 시 참고바랍니다.[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름]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현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현장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매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23.05.09.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등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계약자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3.07.24.(월)	2023.07.25.(화)	2023.07.26.(수)	2023.08.01.(화)	2023.08.04.(금) ~ 2023.08.05.(토) (2일간)	2023.08.14.(월) ~ 2023.08.16.(수)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전예약 현장홍보관 방문 (10:00~16:00) ※ 방문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홍보관(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용현 경남아너스빌 현장홍보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118, 102동 105호) 문의 : 032-888-5554 ※ 검증서류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임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약만 가능(건본주택(현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일 인증서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18290호(2023.07.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용현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7층 4개동, 총 3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조합취소분 아파트 87세대**
 [특별공급 45세대 (일반[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가구 9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8월 예정 **(본 주택은 2023년05월04일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한 아파트로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318	01	059.8058	59	59.8058	23.5147	83.3205	35.4972	118.8177	15.9520	66	7	7	12	2	6	34	32	4
		02	075.0304	75	75.0304	22.7589	97.7893	44.5335	142.3228	20.0128	21	2	2	4	1	2	11	10	1
												9	9	16	3	8	45	42	5

인천 용현 경남아너스빌 유의사항

2023년05월04일 동별 사용검사 완료 (입주 아파트)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 부여	발코니 / 유상 옵션 마이너스 옵션 / 가벽 입주 아파트로 선택 불가
--	--	---	---

- ※ 당 사업지는 2023년05월04일 동별사용검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으로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되지 않으며 현금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에 모집공고 상의 분양대금 납부스케줄을 확인하시어 대금납부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대지비분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03 동	1702	17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1801	18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2202	22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2301	23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스톤(상판)
	2402	24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2601	26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2701	27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스톤(상판)
	2702	27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2802	28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3대, 스톤(상판)
	2901	29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스톤(상판)
	3001	30	138,351,440	303,948,560	442,300,000	88,460,000	221,150,000	88,460,000	44,230,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2대
	3002	30	138,351,440	303,948,560	442,300,000	88,460,000	221,150,000	88,460,000	44,230,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2대
	202	2	104,475,200	229,524,800	334,000,000	66,800,000	167,000,000	66,800,000	33,400,000	확장	설치 / 방 3	
	602	6	114,297,120	251,102,880	365,400,000	73,080,000	182,700,000	73,080,000	36,54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1001	10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1101	11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3대
	1201	12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1401	14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1501	15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2대
	1601	16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1602	16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3대	
1701	17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1702	17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설치 / 방 3		
1801	18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4대, 스톤(상판)	
1902	19	120,259,088	264,200,912	384,460,000	76,892,000	192,230,000	76,892,000	38,446,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3대	
2201	22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3대	
2202	22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미설치 / 방 2	에어컨 3대	
2501	25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2602	26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2801	28	123,900,080	272,199,920	396,100,000	79,220,000	198,050,000	79,220,000	39,610,000	확장	설치 / 방 3		
205	2	133,465,504	293,214,496	426,680,000	85,336,000	213,340,000	85,336,000	42,668,000	확장	설치 / 방 3		
505	5	140,769,384	309,260,616	450,030,000	90,006,000	225,015,000	90,006,000	45,003,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2대	
704	7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705	7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1104	11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3대	
1105	11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1204	12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2대, 스톤	
1404	14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1605	16	144,745,072	317,994,928	462,740,000	92,548,000	231,370,000	92,548,000	46,274,000	확장	설치 / 방 3		
2005	20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2104	21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3대, 미세먼지 제거기, 스톤	
2305	23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2405	24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2505	25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2604	26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김치냉장고 미세먼지 제거기, 스톤	
2705	27	148,761,424	326,818,576	475,580,000	95,116,000	237,790,000	95,116,000	47,558,000	확장	설치 / 방 3		

	3004	30	155,524,160	341,675,840	497,200,000	99,440,000	248,600,000	99,440,000	49,720,000	확장	설치 / 방 3	스톤
	3005	30	155,524,160	341,675,840	497,200,000	99,440,000	248,600,000	99,440,000	49,720,000	확장	설치 / 방 3	
	3205	32	155,524,160	341,675,840	497,200,000	99,440,000	248,600,000	99,440,000	49,720,000	확장	설치 / 방 3	
	3305	33	155,524,160	341,675,840	497,200,000	99,440,000	248,600,000	99,440,000	49,72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2대
	3404	34	155,524,160	341,675,840	497,200,000	99,440,000	248,600,000	99,440,000	49,720,000	확장	설치 / 방 3	에어컨 4대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현장홍보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8058	075.0304
약식표기	59	7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타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동별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으로 발코니는 확장으로 시공되었으며 유상옵션, 마이너스옵션, 가벽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1차,2차)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2차(분양대금의 10%)는 본사용검사 완료일 익일에 납부합니다.
- 별도의 대출 알선이 예정되어있지 않으며, 대출비용 축소, 대출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은 “동별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대상이 아닙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최저층 우선배정세대는 총 5세대로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을 현금납부** 하셔야 하며, **중도금대출(공급자 대출알선 없음) 불가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및 발코니, 유상옵션, 가벽 선택은 불가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선정 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7.24.(월) (청약홈 : 09:00~17:30) (현장홍보관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현장홍보관 방문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사업주체 현장홍보관 현장홍보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구분(약식표기)		59	75	합계
일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2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중소기업 근로자	1	-	1

	장애인	2	1	3
	소 계	7	2	9
다자녀가구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1	5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3	1	4
	소계	7	2	9
	신혼부부	12	4	16
	노부모부양	2	1	3
	생애최초	6	2	8
	합계	34	11	4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 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까지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합니다.)
-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안내 등의 혼동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부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12호~14호, 27호의2, 36조1호 및 8호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기준
23.07.12.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7,811,342원	7,622,057원~9,146,467원	8,040,493원~9,648,590원	8,701,640원~10,441,967원	9,362,787원~11,235,343원	10,023,934원~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9,113,233원	7,622,057원~10,670,878원	8,040,493원~11,256,689원	8,701,640원~12,182,295원	9,362,787원~13,107,900원	10,023,934원~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10,415,123원	9,146,468원~12,195,290원	9,648,591원~12,864,787원	10,441,968원~13,922,622원	11,235,344원~14,980,458원	12,028,721원~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적용은 신청자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기준
2023.07.12.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자격으로 신청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신청자본인의 5년이상 소득세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내용																				
<p>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현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나이는 “만” 나이 기준,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신청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5 1259 2098 1425"> <thead> <tr> <th>구분</th> <th>인천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h>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초과 8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거주개시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단,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 ~ 2년 미만	4	10년이상 ~ 11년 미만	22	
		2년이상 ~ 3년 미만	6	11년이상 ~ 12년 미만	24	
		3년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 미만	26	
		4년이상 ~ 5년 미만	10	13년이상 ~ 14년 미만	28	
		5년이상 ~ 6년 미만	12	14년이상 ~ 15년 미만	30	
		6년이상 ~ 7년 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 ~ 2년 미만	3	10년이상 ~ 11년 미만	12	
		2년이상 ~ 3년 미만	4	11년이상 ~ 12년 미만	13	
		3년이상 ~ 4년 미만	5	12년이상 ~ 13년 미만	14	
		4년이상 ~ 5년 미만	6	13년이상 ~ 14년 미만	15	
		5년이상 ~ 6년 미만	7	14년이상 ~ 15년 미만	16	
		6년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7.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현장홍보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PC :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현장접수 : 10:00~14:00) - 현장홍보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람대로 118)
		<table border="1"> <tr> <td>1순위</td> <td>2023.07.25.(화) 09:00~17:30</td> </tr> <tr> <td>2순위</td> <td>2023.07.26.(수) 09:00~17:30</td> </tr> </table>		
1순위	2023.07.25.(화) 09:00~17:30			
2순위	2023.07.26.(수) 09:00~17:30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PC :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 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불가 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처리 됩니다.
-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6개월 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 아래 증명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 : (출생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 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미만: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비속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 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선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등본상에 등재에 한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초본(전체)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인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 아래 [표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조회내역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인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표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아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 	

				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조회내역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전체)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며,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가점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 공개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상
	○	무허가 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해당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 서류 발급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팩스불가)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팩스불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팩스불가)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팩스불가)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팩스불가)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1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견본주택 비치 (현장홍보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해당직장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한 서류 : 직인 날인 필수(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번호 등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자격확인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08.01.(화)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08.04.(금) ~ 2023.08.05.(토) (10:00~16:00) • 장소 : 당사 현장홍보관 (102동105호)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 당첨자 외 입장 불가합니다.(동반 1인 가능)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08.14.(월) ~ 2023.08.16.(수) 3일간(10:00~16:00) • 장소 - 당사 현장홍보관 (102동105호)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현장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 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8.01.(화) ~ 2023.08.10.(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8.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추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특별공급인 경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에 유의해야함.

V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8.14.(월) ~ 2023.08.16.(수) (3일간) / 10:00 ~ 16:00	■ 인천 용현 경남아너스빌 현장홍보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118) - 당첨자 계약체결 시 방문일 예약은 인천 용현 경남아너스빌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 032-888-5554)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자격검증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특별/일반공급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발코니, 유상옵션 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수입인지(인지세)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기타 무주택자 확인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점 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의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대리인계약시 본인서명확인서 제출불가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점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점자로 선정 시 당점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점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점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점자 포함) 당점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점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점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점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점자 및 부적격 당점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현장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현장홍보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가산세 부과)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대리사무계약에 의해 자금관리는 코리아신탁(주)이 관리하며, 사업주체계좌가 아닌 신탁계좌로 입금해야 함)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093-1997-08	코리아신탁(주)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입금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미체

결로 처리됩니다.

※ 당 사업지는 동별 사용검사를 득한 현장으로 계약 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정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납부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및 잔금 안내**

- 중도금(50%)은 대출 불가로 계약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자납해야 하며 잔금 1차, 2차(30%)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후 지정기간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동별사용검사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본사용검사(본사용승인) 완료 익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분양방식, 공사일정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당 사업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동별사용검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는 중도금대출알선·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분양대금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당 사업지의 특성상 중도금은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항목 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납부일, 잔금 납부일 포함)
-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잔금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일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효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됨)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 납부항목 별 납부지정기간 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 일 다음 날부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및 잔금대출 관련 알선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 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약정한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후 중도금·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는 위약금 수취와 함께 분양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계약자 개인의 여신거래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이 불가한 사유는 계약자의 결격사유 해당됨)

- 계약자가 잔금대출을 신청하였다도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수입금의 수납은 모집공고 상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후 잔금완납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본 주택은 2023년 5월 4일 동별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임)

- 입주지정기간 : 공급계약서상의 계약일로부터 + 45일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 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등),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당 사업지는 2023년05월04일 동별사용검사를 득한 사업장으로 건축공정이 완료되어 발코니, 유상옵션, 가벽,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할수 없으며 각 세대별 마감된 옵션으로 공급되므로 반드시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집공고 10~12p,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참조)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 금액	계약금	잔금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 및 계약금 (총금액의 20%)	분양계약 잔금1차 납부(입주지정일)시 잔금 납부 (총금액의 80%)
59	12,500,000	2,500,000	10,000,000
75	14,000,000	2,800,000	11,20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 최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093-1997-08	코리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분양계약 기간내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수납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203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유의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 ※ 당 사업지는 2023년05월04일 동별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건축공정이 완료되어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1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에어컨 선택		설치대수	판매가
전 주택형	공통	거실+안방	2	3,410,000
		거실+안방+침실1	3	4,796,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4	5,819,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에는 선풍매배관 매립공사가 안방에 1개소, 거실에 1개소에만 기본 제공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함.

- 선택형별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실내기 또는 실외기 포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 옵션으로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기존 실외기에 연결하여 사용할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수 있음

■ **유상옵션 2**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명	주택형	판매가	제조사 및 모델명	비고
김치냉장고	75	1,298,000	삼성 RQ22K5L01EC	
미세먼지 제거기	전 주택형	660,000	AS-150, DSC-300	에어샤워, 에어브러쉬

■ **유상옵션 3 - 주방상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명	주택형	판매가	비고
주방상판 및 타일 일체형	59	2,310,000	엔지니어드 스톤, 아일랜드 상판 포함
	75	2,035,000	엔지니어드 스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납부)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빌트인 가전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수 없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미 선택시 해당부위에는 주방가구 기본장이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반입하는 일반냉장고, 일반김치냉장고 설치시 주방가구장보다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072395	경남기업(주)

품목	주택형	공급 금액	계약금	잔금
----	-----	-------	-----	----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 및 계약금 (총금액의 10%)	분양계약 잔금1차 납부(입주지정일)시 잔금 납부 (총금액의 90%)
시스템에어컨 2대	공통	3,410,000	350,000	3,060,000
시스템에어컨 3대	공통	4,796,000	476,000	4,320,000
시스템에어컨 4대	공통	5,819,000	589,000	5,230,000
미세먼지 제거기	공통	660,000	60,000	600,000
김치냉장고	75	1,298,000	128,000	1,170,000
엔지니어 스톤 아일랜드 상판	59	2,310,000	230,000	2,080,000
엔지니어 스톤	75	2,035,000	205,000	1,830,000

※ 당 사업지는 2023년05월04일 동별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건축공정이 완료되어 유상옵션은 선택할수 없으며 각 세대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상옵션으로 공급됩니다.
 ※ 계약자는 해당 동·호수의 유상옵션 설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분양계약 시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해당되는 유상옵션 금액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VIII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반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합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 될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 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동별·층별 등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위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및 항공기운항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현장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수인·동의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근 학교 학생배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학교에 배치됨. 초등학교는 신선초등학교 배치 가능, 중학교는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교는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내 분산배치 가능.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 계획은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0.169g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변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현장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당첨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현장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현장홍보관)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본 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대지경계(구획)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유토지임.
<p>설계 및 단지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수인·동의합니다. • 공동주택의 주차는 지상 주차, 지하1층에서 지하3층까지 31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 높이는 2.3m이며 층고는 지하1층 3.8m, 지하2층 3.6m, 지하3층 3.6m입니다. 지하1층~3층의 유효높이는 주차구간 2.1m, 차로구간 2.3m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6 ①항에 의거하여 2%범위인 6대가 설치됩니다. • 단지의 내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에 의한 소음, 시각적 간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하부분은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공동시설에 의한 소음, 시각적 간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동의 엘리베이터는 동의 조합형태 및 층수에 따라 2대 혹은 1대로 구성되어 있어, 각동별로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 차량 주출입구를 같이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입점자,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쓰레기 수거차량등)은 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흠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선형등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에 따른 시공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하드웨어,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 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풍의 환기용 D/A 및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D/A는 본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등, 사생활이 침해될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 및 소음 발생이 있을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동 색채 디자인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차량불빛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휼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우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수인 합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수인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ELEV-HALL,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 • 이삿짐은 단지의 특성상 지상1층 통해 각종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쓰레기차량 동선 또한 지상층에 계획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훼손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 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화조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성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상구조물, 자전거보관소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변경이나, 포장 및 조경시 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다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및 정화조, 빗물저류시설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및 브랜드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 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생활폐기물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시각적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구조 부재의 재료강도 부재크기 및 배근설계 등은 실시설계시 증감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정 및 기초형식은 실제 지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설휴막이, 기초설계는 상세검토와 현장상황 및 실제 지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은 대관 인허가 과정 또는 실시공시 사용자 동선/기능/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인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일 이후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결로,곰팡이등 하자발생을 억제할수 있으며 미 가동에 따른 곰팡이, 결로하자등 발생은 시공사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실제 입주시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lleh TV, 지니뮤직 등) • IoT가전연동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은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KT IoT 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내 IoT 시연부스와 영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현장홍보관)이나 광고에 사용된 홈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 조합사무실 및 아너스빌 A/S센터면적으로 제공 운영 됩니다.
<p>단위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동과 202동 사이 지상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됨

- 201동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입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이 설치됨
- 202동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북카페) 설치됨
- 203동 지상1층에 경비실, 관리사무소(방재실)가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함
- 201동과 202동 사이에(단지 북서측)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설치됨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은 201동과 차량램프 사이, 202동과 차량램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201동 1호라인(2개층 필로티) 및 3호, 5호라인(각1개층 필로티), 202동 2호라인(1개층 필로티)은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저층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 및 보행등으로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수 있음
- 각 동 위치한 조경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내 전면 발코니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시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현장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수 있으며, 방충망 설치가 불가할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현장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방수턱 물막이로 시공오차가 있을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이 걸릴수 있으며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 뒷 발코니 도어하부 턱은 도장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타일마감 부분에 대해서는 몰탈 떠붙임 공법(화장실 벽체)으로 시공된 부분은 몰탈이 100%로 충전되지 않아 빈 공간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부분이 아님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종 장비(각종훤, 환기설비,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방화셔터등) 미가동 및 입주자 생활습관으로 인한 장비의 고장 및 하자(결로, 곰팡이)발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의 책임사항으로 당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계 및 시공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해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변경 될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수 있음
- 본 단지는 아암대로와 인접하고 매소홀로와 근접하고 있어 일부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욕실가구,현관수납장,침실물박이장 뒷벽 및 아래에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이 되지않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외부창호, 매립형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단위세대의 미서기창에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창호와 다를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상에 태양광설비 및 201동 최상층 옥상에는 헬리포터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주변민원 건물이 당현장 부지를 일부 침범함에 추후 민원과의 협의에 따라 대지 면적감소 예상됨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발코니2 문폭 증가를 위해 도어 재질이 변경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p>기계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난방은 세대내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읍선세대의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용 배관이 노출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소화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또한 , 상부세대 배관의 유비/보수/관리를 위하여 작업자 출입에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는 세대내 싱크장하부 설치하고,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전기공급설비가 설치될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전기 공급업체(한전)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사항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입주 후 이에 따른 입주자 부담의 관리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차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주방은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렌지 사용을 위한 가스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정부 및 하부장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일 후 단지 내 공유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급수펌프, 배수펌프, 소화펌프, 급기휀, 배기휀, 동파방지용발열선, 빗물이용시설, 정화조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에는 환기용 급기휀 또는 배기휀을 작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 후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를 설치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발코니에 설치된 각종수전 및 세탁기의 동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외부창호 여닫이를 확인 등)를 하여야 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사업지 내에 설치되는 CCTV모니터(DVR용)는 1년간 품질을 보증합니다. • 세대별 무선AP는 기간사업자로부터 인터넷 가입후 가능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속도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수 있습니다. • 가구류, 거울, 약세사리, 수건장, 욕조등 세대내 부착물 설치면 바닥 및 배면등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타일 등 시공방법상 배면에 몰탈충진이 100%충진되지 않는 시공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후면 발코니문(또는 창호) 등의 내폭은 견본주택(현장홍보관) 및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가전제품 구입 및 반입시 사전 문짝 설치기준 내폭을 판단하여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에는 쾌적한 실내공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를 하여야하고 세대 내 적정습도 유지하여야 하며 환기불량에 따른 실내습도 과다발생에 따른

	<p>결로, 곰팡이 등으로 벽지 및 가구류에 하자가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하며 이에 원인으로 하자보수가 불가할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기상부와 타일벽이 만나는 부위에는 곰팡이등의 하자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실리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세대 드렌처설비공사(스프링클러설비의 일종)에 따른 배관 노출이 될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배관의 노출부위는 주방상부장 뒷면, 발코니, 실외기실, 드레스룸등의 창호부분이며 소방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p>발코니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 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가급적전 세대가 확장하실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현장홍보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현장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절수 설비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

■ **감 및 감리 금액**

구분	건축 / 토목 / 기계	전기감리	소방 /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신원기술단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씨
감리금액	₩1,007,244,700 (부가가치세포함)	₩469,172,000 (부가가치세포함)	₩385,000,000 (부가가치세포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고지사항**

- 코리아신탭(주)(이하“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사업주체(“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사업주체(“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한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수 없고, 사업주체(“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 **사업주체, 자금관리대리사무사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시공사	분양대행
상호	인천 용현 지역주택조합	코리아신탭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해움아라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람대로 101, 405호 (용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11층 (대치동, 해성2빌딩)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82 (당하동, 1-1호)
법인등록번호	211-82-66398 (고유번호)	110111-2937831	110111-0008262	120111-0719940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현장홍보관 위치	홈페이지
032-888-55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용현동)	http://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com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인천용현경남아너스빌.com>

☑ 현장홍보관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용현동) / 용현동 627-12번지

☑ 분양문의 : 032-888-555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현장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

☑ 기타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인증서 *우량등급(복합)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용현 오션뷰 경남아너스빌 건축주 : 인천용현치역주택조합 준공(예정)일 : 2023.05.04.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7-12 층수 : 지하3층,지상37층 면적 : 47,328.1891㎡ (필가면적: 47,328.1891㎡) 건축물용도 : 복합(공동주택+업무용건축물) 설계자 : (주)비오엘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경남기업(주) 공사감리자 :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C-2023-0413-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3.05.25. ~ 2028.05.24.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8-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3년 05월 25일



한국부동산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1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용현 오션뷰 경남아너스빌(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0430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118 층수 : 지하3층 / 지상37층 면적 : 47261.1705(㎡)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비오엘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경남기업(주) 공사감리자 :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3-주-본-1-0036 평가자 : 이승환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33-04-13 까지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	48	30.5
에너지 절약 건축설계	10	2	56	
에너지 효율 건축설계	20	3	64	
에너지 보통 건축설계	30	4	72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40	5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6.4	75.9	59.2	15.9
급탕	30.7	34.7	25.8	7.1
조명	13.5	12.4	34.2	5.8
환기	3.7	3.7	10.1	1.7
합계	80.6	126.7	129.3	30.5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차이,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율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장

2023년 04월 13일

